

## 연금시장리뷰 6호

#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증권사의 전략 방향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명대학교 : 김재현 교수 (041-550-5328, rmikim@smu.ac.kr)

## □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증권사의 전략 방향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실적은 2009년 11월 말 현재 가입근로자 수 172만명, 도입사업장 수 6만 7천개, 적립금 규모 10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적립금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3년 반 동안 분기당 3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결과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권별 적립금 실적을 보면 은행이 54.2%, 생보사가 28.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점유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3조원 규모의 퇴직보험(신탁)제도가 2010년 폐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가입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권사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는 규모가 아닌 제도의 도입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을 제도가 아닌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단기적인 성과주의가 자칫 근로자 수급권 보호라는 도입 목적을 훼손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정부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 있는데, 개별 근로자에게 DB와 DC의 혼합형 제도나 Cash Balance Plan이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확정기여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증권사의 강점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것 같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단기 실적 위주 전략은 기업과 근로자의 원리금보장상품 니즈와 맞물려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자행예금 등 자기상품에 약 85%를 투자하는 적립금 운용을 야기하고 있다. 원리금보장 만능주의는 장기적으로 투자기회를 축소시켜 근로자 수급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상품 투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이익 상충을 일으켜 가뜰이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형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우선 자기상품에 대한 비율규제 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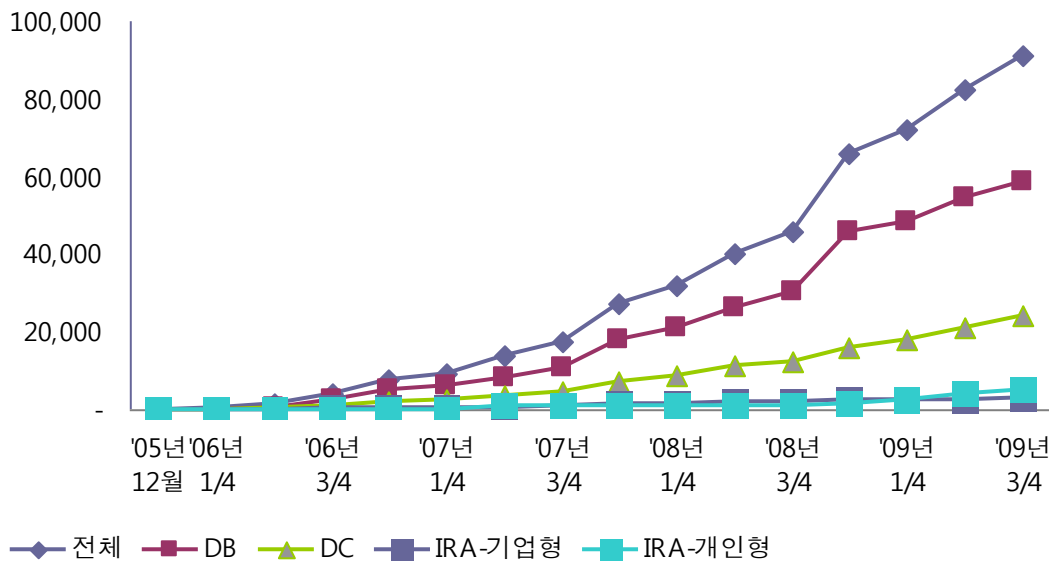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생보사에 비하여 투자전문기관으로서의 인식과 역량이 있으나 기업과의 네트워킹에서 열세이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확정기여형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다양화되면서 확정기여형 니즈가 높아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기업이나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때 투자형 상품이 활용될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처럼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는 투자전문 금융기관의 인식에 걸맞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퇴직연금상품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상품운용 및 교육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시장

○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초기에 다소 도입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11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 실적은 가입 근로자 수 172만명, 도입사업장 수 6만7천개, 적립금 규모는 10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퇴직연금제도가 인식되기 시작한 2006년 2/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퇴직연금시장은 적립금을 기준으로 분기 평균 3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확정급여형이 전체 적립금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은 26.6%, 기업형 IRA, 3.4%, 개인형 IRA 5.6%에 머무르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적립금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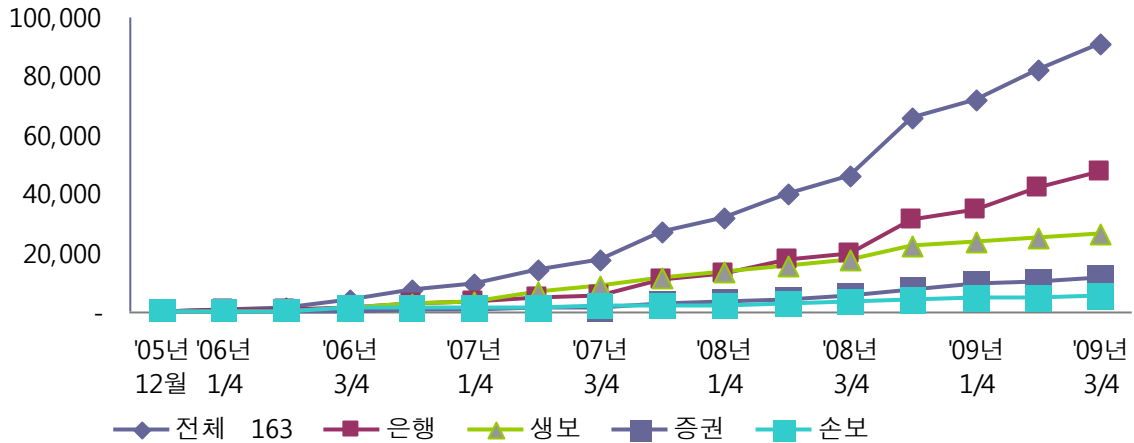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 증권사의 퇴직연금 실적은 은행의 1/4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들어 다소 호전되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권별 실적을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4.2%를 차지하고 있고, 생보사가 28.2%, 증권사 11.7%, 손보사 5.9%에 머무르고 있음
  - 2008년 4/4분기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은행의 경우 2위권인 생보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음
  - 증권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 적립금 추이 >



자료 : 노동부

○ 2010 년에 퇴직보험(신탁)제도에 가입한 기업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5 년만에 커다란 전기를 맞이할 것

- 2010 년 퇴직보험(신탁)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3.2 조원에 이르는 퇴직보험 적립금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서베이에 따르면 퇴직보험(신탁) 가입 기업 중 60%(김원식, 2008)에서 80%(Towers Perrin)가 2010 년 이후에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퇴직보험(신탁) 가입 기업이 2010 년 이후 중간정산이나 퇴직금제도로 선택하지 않게끔 퇴직연금에서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현황 >

(단위 : 억원)

은행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전체
45,424	166,423	21,139	-	232,986

주 : 1. 2009 년 8 월말 현재

- 은행이나 생보사에 비하여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떨어지는 증권사는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장에서 주변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음
  -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대출과 연계된 네트워크와 단체보험으로 다져진 강한 영업력을 갖추고 있음
  -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자본시장의 회복이 더딜 경우 증권사가 주력하고 있는 확정기여형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임
  - 다만 퇴직보험(신탁) 가입 기업이 비교적 대형 사업장인 까닭에 복수 제도 또는 복수

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기여형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가  
부수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오히려 높음

## 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의미

### ○ 양적 기준에 따른 활성화의 의미와 한계

- 우리는 자칫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여부를 적립금 규모 또는 가입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더욱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법에 의한 제도가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
  - 퇴직연금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이 법정제도가 아닌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종업원복지제도의 일부이며, 단지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도입을 장려할 뿐
  - 반면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퇴직금제도 중 택일)되는 만큼 준공적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이해하고 마케팅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시간이 지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즈음에는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강하므로 퇴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제도는 계속 존속할 것임

### ○ 질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

- 퇴직연금 활성화 여부는 적립금 규모보다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인데,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부터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임
  - 소극적인 수급권 보호는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
  - 적극적인 수급권 보호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근로자 연금 수령시 의도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이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노후소득보호제도로 정착될 것임

### 3. 초기 시장의 성장세를 뒤쫓지 못하는 제도

#### ○ 퇴직연금제도가 단기에 법으로서 도입된 탓에 적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안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 높은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보완을 걸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착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도입 역사가 짧은 탓에 선진 제도에 비하여 제도의 완성도가 크게 뒤떨어짐
  - 확정급여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적적립기준이 60%로서 100%가 보편적인 선진 제도보다 수급권 보호가 취약하며, 그나마 적립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적립수준 이행 여부 보고 의무가 부재한 탓에 적립수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확정기여형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적립금 운용 규제가 효율적인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고 있어 확정기여형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이 같이 재정건전성이나 적립금운용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연속성 강화, 퇴직연금 교육, 연금계리인, 지급보장장치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제도적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의 양적 팽창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제도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증권사의 경우 경쟁력 제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적립금운용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제도적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퇴직연금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 방향 >**

구분	내용
퇴직연금제도 연속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이외에도 결혼, 교육비, 전세금 등으로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li> <li>- DB, DC 에서 퇴직 시 일부 사유(55 세 이후 퇴직 등)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IRA 로 강제 이전</li> </ul>
확정급여형 재정건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금 산정 및 기초율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최소적립금을 6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li> <li>-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li> </ul>
퇴직연금제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개인이 DB 와 DC 를 혼합하여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li> <li>- DB 와 DC 의 장점을 혼합한 Cash Balance Plan</li> <li>- 여러 사업장이 함께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는 연합형 플랜 허용</li> </ul>
개인퇴직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퇴직계좌(IRA)를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있는 개인퇴직연금(IRP)로 확대 전환</li> </ul>
적립금 운용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기여형의 운용방법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제를 확정급여형의 총 투자한도 규제형태로 변경</li> </ul>
가입자 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의 공통사항 위주 정리, 가입자 수익률 등 개별사항은 통지로 활용</li> </ul>
사용자 감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의 DB 단체의 경우 투자원칙보고서 작성</li> <li>- 리베이트, 확정수익률 제시 요구 등을 금지</li> </ul>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설계사, 대리점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공인노무사의 퇴직연금 모집 허용</li> </ul>

- 법이 개정될 경우 근로자 수급권이 보다 강화될 뿐만 아니라 가입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증권사의 경우 확정기여형 적립금운용 규제 완화 이외에도 혼합형 제도 허용 등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가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4. 퇴직연금의 활성화 여부는 정부 정책 못지 않게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달려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중요**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
  - 이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 아래에서는 근로자가 제도 도입 합의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부담금 의무를 감시할 길이 차단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계약형 지배구조는 독립적인 신탁(이사회)을 통해 유지되는 영미식 지배구조나 노사간 계약에 의해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지워지는 유럽식 지배구조에 비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취약함
- 따라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확정급여형에서 적립금 운용을 위한 자산관리계약이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 이루어져 기존 금융상품계약의 틀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가입근로자 교육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모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의 정상화가 시급**

- 퇴직연금사업자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마케팅 위주의 퇴직연금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은행의 대출과 연계된 소위 '꺾기' 관행이나 보험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퇴직연금에서도 성행하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업의 효율적인 퇴직연금 도입 결정을 저해하고 있음
  - 예컨대, 기업이 압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운용수수료부담이나 교육 등에서 사용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아 끝내 가입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원리금 보장형 상품 및 자사 상품 집중식 적립금 운용으로부터 탈피 필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 근로자 및 정책당국의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와 자본시장 약화 등이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원리금 보장형 일색으로 구성
  - 2009 년 6 월말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은 적립금을 기준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음



- 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시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을 놓고 퇴직연금사업자간 치킨게임(Chicken game)이 벌어지고 있음
  - 수익률 경쟁에서는 조달금리가 낮고 금리 결정이 유연한 은행이 단연 유리한 고지에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ELS 상품을 운용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과도한 원리금보장형 상품 집중은 장기적으로 결코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임.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 등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할 수 있음
  - 지나친 확정수익률 경쟁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인프라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것임
  -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퇴직연금시장 진출 시 이에 맞설 국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강화에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 더욱이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자사상품 운용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라는 퇴직연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채 근로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상품 비중은 약 8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
  - 은행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탁자의 이익을 배제해야 하는 신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보험계약에서도 비록 퇴직연금적립금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님
- 결국, 우리나라의 취약한 인프라를 고려하다 보니 모양만 신탁일 뿐 신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한다지만 신탁고유의 특성을 찾기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약으로는 다소 취약한 보험계약으로써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고착화되기 전에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자사상품 비율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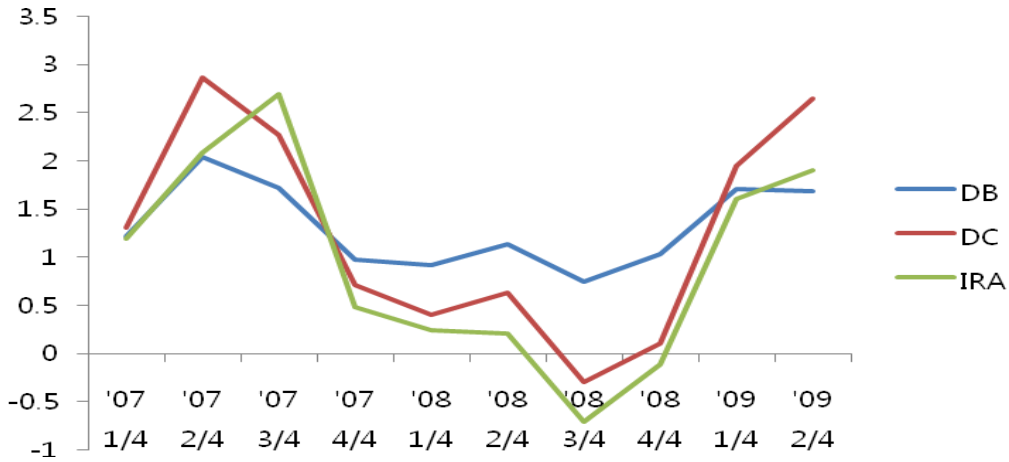
○ 교육 강화 필요

-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교육은 기업과 근로자의 무관심, 퇴직연금사업자의 인프라 부족 및 비용 부담(사업주의 부담 회피)으로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근로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온라인 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입근로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며, 교육과정의 기본인 교육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feedback 조차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등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교육의지를 상실하고 있음
- 특히 가입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에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음

○ IRA 가입근로자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인퇴직계좌는 상대적으로 가입 사용자가 영세(기업형 IRA)하고, 적립금 규모가 작은 한편 노조를 통한 근로자의 결집력도 없는 탓에 퇴직연금제도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운용관리수수료의 사용자 부담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수익률 역시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기여형 대비 떨어지고 있음
- 퇴직금제도에서 수급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온 근로계층이 중소형 사업장 근무 근로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IRA 가입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임
-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현행 IRA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IRA 의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시행될 경우, 제 2 의 세제적격개인연금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공시수익률 평균 운용수익률 추이 >



주 : 은행연합회, 생손보험회,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수익률 평균값으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음

5. 증권사의 전략 방향

○ 증권사 퇴직연금사업의 SWOT 분석

-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사의 강점은 투자전문역량과 이를 인정하는 외부 인식을 갖고 있으나, 반면에 은행이나 대형 보험사 대비 기업과의 네트워크이나 자본력 부족이 약점이 되고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사의 기회는 단기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다양해지고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나, 당장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권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자칫 원리금보장형 만능주의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음

< 증권사의 퇴직연금사업 SWOT 분석 >

Strengths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투자역량</li> <li>- 투자전문가로서 외부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부족</li> <li>- 은행과 대형 생보사 대비 자본력 부족</li> </ul>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제도의 다양화 및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li> <li>- 선진국과 같은 DC 니즈 증가 패턴 답습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 침체로 인한 원리금보장상품 니즈 증가</li> <li>- 정치권, 노조 등에서 투자 안전제일 주의 팽배</li> </ul>

○ 증권사의 향후 퇴직연금사업 전략 방향

- 단기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놓고 벌이는 수익률 경쟁에서 증권사는 은행과 대형 생보사를 뛰어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증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확정기여형이 활성화되기에는 현재 증시나 규제 등 투자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확정급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입근로자 교육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하여 퇴직연금사업 만족도가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 발표된 퇴직연금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가 퇴직연금사업에서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뛰어들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어, 증권사의 퇴직연금사업 참여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하여 저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적금에서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투자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니즈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상품이 다양해질수록 확정기여형의 니즈 또한 증가할 것임
- 그리고 퇴직연금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라는 목적을 뛰어 넘어, 선진국에서처럼 기업에서 우수한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증권사는 투자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인식에 걸맞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퇴직연금상품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상품운용 및 교육 인력 양성에 힘을 써야 할 것임

상명대학교 김재현 교수(041-550-5328, rmikim@smu.ac.kr)